

작성방법

1. 보고시기: 보고하는 연도를 적고 해당하는 분기에 '√' 표시를 합니다.
2. 피폭방사선량을 고려한 방법: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편성 시 탑승근무 시간 분배 등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한 방법을 적습니다.
3. 조치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강진단 결과 해당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악화 우려가 있고 비행 탑승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한 후 작성합니다.
 - 내용란: 해당 승무원에 대해 실시한 조치사항을 적습니다.
 - 사유란: 기준 초과 우려, 의사의 소견, 기준 초과 등 조치를 실시한 사유를 적습니다.
4. 정보제공 실적
 - 방법란: 개인별 전자우편 발송, 사내 전산망 활용 등 정보제공을 수행한 방법을 적습니다.
 - 내용란: 개인별 연간 피폭방사선량 등 승무원이 제공받는 내용을 적습니다.
 - 비고란: 승무원이 별도로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